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려금 신청대상

'20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0년 상반기('20년 9월) 또는 하반기('21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 가구원 및 총소득 요건

구 분	가구원 요건 ('20. 12. 31. 기준)		총소득 요건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연령제한없음)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2.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그 배우자포함)의 2020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② 재산요건 ('20. 6. 1.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3.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 ARS전화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 앱(모바일)

②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입니다

※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 1 ARS
☎ 1544-9944
- 2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 3 홈택스
www.hometax.go.kr
- 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자격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가구에 따라 2천만~3천6백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20.6.1.기준, 부채 차감하지 않음)

※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www.hometax.go.kr) 참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 가구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0백만원, 홀벌이 30백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에 의해 산정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만 ~ 2,000만원 미만	4만 ~ 3,000만원 미만	600만 ~ 3,6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재산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20.6.1.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유가증권

공통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월 31일까지 신청)

1.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준비물 : 본인명의 계좌번호 / 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SC제일	12
농협은행	2	광주	13
국민	3	경남	14
우리	4	산림조합	15
신한	5	산업	16
기업	6	상호저축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하나	9	전북	20
대구	10	제주	21
부산	11	한국시티	22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인터넷)



4. 신청도움 서비스

- 1544-9944, 손(홈)택스 신청이 어려우시면 아래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신청요건(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참조)이 충족된 경우, 위 신청 방법 중 3. 홈택스(일반신청) 또는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